

(서울 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78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무 11010- 1925

시행일자 1994. 12. 10

(경유) (제 1 인)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7h 9m /
법무 담당관	[인]	
법재계장	[인]	
기안	이종범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예규안 1부, 끝.

(제 2 인)

수신 공보1담당관

제목 시보개재

1.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랍.

첨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 595 호 2부, 끝.

(제 3 인)

수신 ~~농수산국~~ ~~수박계장~~ 과장

제목 예규발령 통보

1. 농유 51160-2739(94. 12. 3)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

가. 발령예정일 : 1994. 12. 10.

첨부 서울특별시에규 제 595 호(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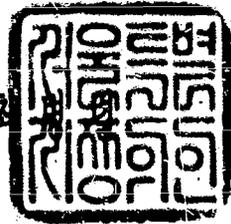
서울 특별시 장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4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주요명칭이 변경되었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반입농산물 전량 상장매매가 '9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배추 등 주요 비경매품목을 취급하는 별도의 도매시장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정도매인·중매인 및 중매업의 명칭 변경(안 제4조의)

- (1) 지정도매인 → 도매시장법인
- (2) 중 매 인 → 중도매인
- (3) 중 매 업 → 중도매업

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상한수 변경(안 제6조)

- 청과부류 : 4개 법인 → 5개 법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제5조의2·제6조 제목 및 본문·제7조 제목 및 본문·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 제목 및 본문·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4조·제25조·제28조중 “지정도매인”을 각각 “도매시장법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2조·제14조 제목 및 본문·제18조·제22조·제24조·제28조중 “중매인”을 각각 “중도매인”으로 한다.

제5조의2제8호중 “중매업”을 “중도매업”으로 한다.

제6조제1호중 “4개 법인”을 “5개 법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동조제4항제1호중 “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호1”을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참가인”으로 한다.

제5조의2중 “제2조”를 “제4조”로, 제13조제2항중 “제19조 제1항에 각호”와 동조제3항중 “제19조제1항 각호”를 각각 “제21조제1항”으로, 제15조중 “제9조 및 제10조”를 “제19조 및 제20조”로, 제19조제3항제3호중 “제15조”를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제7호서식중 “지정도매인”을 각각 “도매시장법인”으로, 제7호서식중 “지정도매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제7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제5호서식중 “제7조제4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6호서식중 “제7조”를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업무규정은 19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개장일) ① (생략)</p> <p>②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지정도매인</u>으로 하여금 이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개장 시간등) ① (생략)</p> <p>②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지정도매인</u>으로 하여금 이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의2(도매시장 관리공사의 업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이하 “도매시장관리공사”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u>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중매인,</u>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p> <p>4. <u>지정도매인이</u> 납부한 보증금및 담보물의 관리</p> <p>5~7. (생략)</p> <p>8. <u>지정도매인의 지정및 중매업의</u> 허가추천과 영업정지, 취소의 건의</p>	<p>제4조(개장일) ① (현행과 같음)</p> <p>②<u>도매시장법인</u>.....</p> <p>제5조(개장 시간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도매시장법인</u>.....</p> <p>제5조의2(도매시장 관리공사의 업무)<u>제4조</u>.....</p> <p>1~2. (현행과 같음)</p> <p>3.<u>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u>.....</p> <p>4. <u>도매시장법인</u>.....</p> <p>5~7. (현행과 같음)</p> <p>8. <u>도매시장법인</u>.....<u>중도매업</u>..</p>

현행	개정안
<p>제6조(지정도매인의 상한수)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상한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청과부류 : 4개 법인</p> <p>2. (생략)</p>	<p>제6조(도매시장법인의 상한수)도매시장법인..... </p> <p>1. 5개 법인</p> <p>2.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정도매인의 지정신청) 지정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6. (생략)</p>	<p>제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 도매시장법인..... </p> <p>1~6. (현행과 같음)</p>
<p>제8조(보증금의 납부) ①지정도매인은 지정도매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지정도매인은 제1항의 보증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도매업무를 개시할 수 없다.</p>	<p>제8조(보증금 납부) ①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법인..... </p> <p>②도매시장법인..... </p>
<p>제9조(보증금의 추가납부) ①지정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사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제9조(보증금의 추가납부) ①도매시장법인..... </p>

현행	개정안
<p>②지정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는 도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p>	<p>②도매시장법인.....</p>
<p>제10조(보증금의 반환) 보증금은 지정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출하자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p>	<p>제10조(보증금의 반환).....도매시장법인.....</p>
<p>제11조(휴업, 폐업의 허가) ①지정도매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승인 일까지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지정도매인이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11조(휴업, 폐업의 허가) ①도매시장법인.....</p> <p>②도매시장법인.....</p>
<p>제12조(지정도매인의 장부 비치 및 보고) ①지정도매인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제12조(도매시장법인의 장부 비치 및 보고)①도매시장법인.....</p> <p>1~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5. 입별, 품목별, 반입량, 거래물량, 거래액, 판매원표, <u>중도매인</u>별 의상판매 일계표, 내정가격 기록부</p> <p>6. (생략)</p> <p>② <u>지정도매인</u>은 전항 5호의 장부중 입별, 품목별 반입량, 거래물량, 거래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경매사의 승인등)① <u>지정도매인</u>은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매사 및 보조경매사 각각 10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p> <p>② 경매사를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9조의 제1항에 각호의 자격요건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u>지정도매인</u>이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경매사에 임면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매사 승인신청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5. <u>중도매인</u></p> <p>6. (현행과 같음)</p> <p>② <u>도매시장법인</u>.....</p> <p>제13조(경매사의 승인등)① <u>도매시장법인</u></p> <p>②..... <u>제21조제1항</u>.....</p> <p>③ <u>도매시장법인</u>..... <u>제21조</u> <u>제1항</u>.....</p>

현행	개정안
<p>③사장은 <u>지정도매인</u>이 결제 기한후 15일이 경과하여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하자의 청구에 의하여 <u>지정도매인</u>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1일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③.....<u>도매시장법인</u>.....<u>도매시장법인</u>.....</p>
<p>제22조(거래관계자의 표지)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u>중매인</u> 및 매매참가인은 사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모양의 모자, 완장등 표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는 도매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p>	<p>제22조(거래관계자의 표지)<u>중도매인</u>.....</p>
<p>제24조(개선조치 명령) 사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지정도매인</u>, <u>중매인</u> 기타 시설 사용자에게 대하여 업무 또는 회계등 기타 필요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24조(개선조치 명령).....<u>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u>.....</p>
<p>제25조(도매업무의 대행) ①사장은 <u>지정도매인</u>이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도매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u>지정도매인</u>이 그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25조(도매업무의 대행) ①.....<u>도매시장법인</u>.....<u>도매시장법인</u>.....</p>

현행	개정안
<p>제28조(재해시의 물품 확보) 사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u>지정도매인</u> 또는 <u>중매인</u>에게 물품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제28조(재해시의 물품 확보)..... <u>도매시장법인</u>.. ...<u>중도매인</u>..... </p>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8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무 11010-4405-2024

시행일자 1994. 11. 23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과장		법무담당관
보좌		
기획관리실장	전결	76 9 12 1
법무담당관	지	
법제계장	32	
기안	이종범	법조

제목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운영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운영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예규제 596 호

결부 : 예규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공보관

참조 공보1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운영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결부 : 서울특별시에규 제 596 호 2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 3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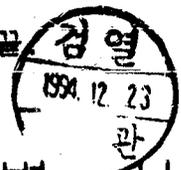
수신 상공과장

제목 예규발령 통보

1. 상공55471-2746(94.12.17)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운영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결부 서울특별시에규 제 596 호(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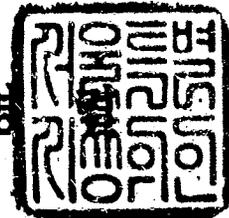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4 년 12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최 병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운영규정안

1. 제정이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육성계획 수립·집행시 중소기업지원기관인 지방조직의 전문적인 지원기능을 활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협의회의 구성 (안 제2조)

- 총 11개기관 12명 (중소기업진흥공단외)

나. 기능 및 임무 (안 제3조)

- (1) 지방중소기업지원에 관하여 구성기관간의 협의·조정
- (2)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 (3) 지방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렴 및 전달

다. 회의 운영 (안 제5조)

- 개 최 : 정기회의(격월), 임시회의(수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운영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부장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지회장
3. 한국무역협회 무역조사부장
4. 대한무역진흥공사 국제화지원실장
5. 서울상공회의소 산업부장
6. 산업기술정보원 서울지역 정보센타소장
7. 한국표준협회 QM추진부장
8. 한국생산성본부 상무이사
9. 고려무역(주) 정책사업부장
10. 국립공업기술원 기획과장

제3조 (협의회의 기능 및 임무)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수행한다.

1. 지방중소기업지원에 관하여 구성기관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결정사항의 원활한 집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지방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조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에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협의회의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공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